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 2018-45호

## 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 년 4 월 13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응봉교앞 보도육교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30-2	성동구청 토목과	별표 1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등급 D등급으로 손상부에 대한 부분보강은 불가능한 상태로 장기적으로 철거가 필요함 주민 안전을 위해 우선 폐쇄 조치 예정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성동보건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23길 10, 성동구보건소 (홍익동)	성동구청 보건위생과	별표 1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p>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p> <p>*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p> <p>※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p>	<p>안전등급 D등급으로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누전 및 전기사용 과다로 인한 과부하로 전기다운 현상이 조사되었고 설비 배관이 매우 노후화 되어 일부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등 전체적인 부분에서 노후화가 많이 진행됨</p> <p>재난관리기금 등을 통해 전면적인 보수·보강 실시 예정</p>